

농사포기 농업인에 ‘회생사다리’... 희망 이어준 농어촌공

#A씨는 하루하루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A씨는 농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이때 A씨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7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와 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해당 농가에 7~10년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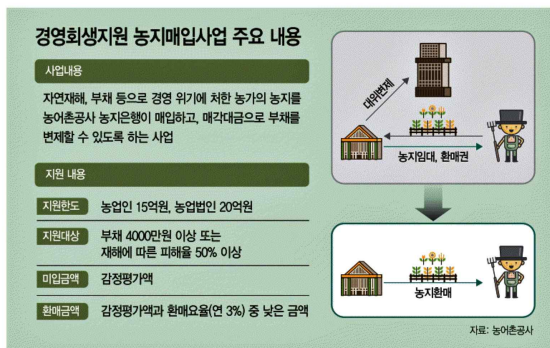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7~10년 장기임대 후 환매권 보장 지난해 2907억원 회생자금 지원 제도 개선 통해 분납 기간 늘려 소득 안정화·영농 지속성 기여

는 사업으로, 2023년 농지은행은 683농가에 2907억원의 회생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환매 대상 농가 중 87%를 상회하는 5154농가가 환매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매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 개정을 완료한 게 대표적이다.

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매 대금 분할납부기간을 10년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임대 기간 종료 후 환매 가격의 100분의 30 이상을 환매 당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3년 3회 이내 분납하도록 규정했다”면서 “하지만 환매 대금에 부담을 느끼고 환매를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환매 의욕을 높이고 계속 영농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 한도를 농업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농업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농지은행은 농업인의 환매를 돕

기 위해 임대기간 연장 평가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50점으로 완화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기준을 낮췄다”면서 “농업인의 영농 지속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 환매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농촌의 핵심 인력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의 영농활동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례로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등이 농지은행과 순 부채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시 납부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당초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해 3700만원 이상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본인의 농업 외 소득으로 한정해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영농의 지속성을 결정한다”면서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농업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상은 기자 leep3102@